

제2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4. 10.

임실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한·미 FTA의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임실군 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세율조정 (안 제24조)
  - 배기량 1,000cc 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cc 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협의 :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2015.03.06. ~ 2015.03.2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4).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 5). 성별영향평가분석 :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붙임
-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 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영업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8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원</td> </tr> <tr> <td>1,6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원</td> </tr> <tr> <td>2,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1,6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원</td> </tr> <tr> <td>2,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2,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r> <td>2,5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원</td> <td>2,0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원</td> </tr> </tbody> </table> <p>2. ~ 6. (생략)</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p>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 ----- -----.</p> <p>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용</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영업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배기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td> <td></td> </tr> <tr> <td>1,6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원</td> <td>1,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원</td> </tr> <tr> <td>2,0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1,6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원</td> </tr> <tr> <td>2,500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9원</td> <td>1,6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원</td> </tr> <tr> <td>2,500cc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 6. (현행과 같음)</p>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3. 미첨부 사유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 4. 작성자

재무과 세정팀장 노준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A 전북임실011		
정책명	임실군 군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라경채	전화번호 063-640-2183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무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세율 조정(안 제24조) - 배기량 1,000cc 이하 : 시시당 세액 100원 → 80원 - 배기량 2,000cc 초과 : 시시당 세액 220원 → 200원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2,000cc 초과에 대한 혜택을 200원으로 할 경우 1,000cc 이하에 대하여 60원, 1,600cc이하 120원 1,600cc초과 140원, 2,000cc초과 200원 등으로 서민층, 약자 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재무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표준세율인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분석평가 검토의견에 의한 서민층, 약자 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세율 이하로 세율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015년 03월 30일  <b>재 무 과 장</b>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참고****관련(상위) 법 발췌문**

##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